

Deloitte Insights

Image generated by AI

July 2026



美 무역사기TF가 재정의한 통상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한국 딜로이트 그룹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Executive Summary	03
01. 무역사기TF의 3대 사법 메커니즘: '고의적 외면' 법리와 공급망 실사 책임	04
1. 민사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의 적용과 징벌적 배상	04
2. 형법 제545조(18 U.S.C. § 545)에 의거한 형사집행 및 자산몰수	05
3. 조직범죄피해방지법(RICO) 및 자금세탁방지법의 연계	05
02. 무역사기TF의 주요 집행 유형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점	06
리스크 1: 제3국 우회수출 및 원산지 허위 표시 (Transshipment)	06
리스크 2: 반덤핑·상계관세(AD/CVD) 회피와 세번(HTS) 오분류	06
리스크 3: 강제노동 규제범위 확대와 입증책임 전환	07
03. 최대 90일의 골든타임, 형식적 서류의 한계	08
04. C-Suite를 위한 선제적 방어 전략 (Action Plan)	09
① C-Suite 직속 '대미 무역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신설	09
② 디지털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 인프라 및 과학적 검증 도입	09
③ 평시 '美 CTPAT 무역 준수 파트너십' 사전 확보	09
05. 경영진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10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공급망(SCM)의 지정학적 균열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 리스크는 이제 단순한 비용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 운영과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 2025년 8월, 미국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와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 Border Protection)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무역사기TF'(Trade Fraud Task Force)는 기존의 행정적 집행에 민·형사상 집행을 연계하며 글로벌 통상 컴플라이언스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2026년 6월 3일 선포된 백악관 행정명령 제14411호(Executive Order 14411) '세관 단속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는 이러한 흐름에 강력한 제도적 뼈대를 박았다. 해당 행정명령은 무역사기TF 참여기관의 관세 집행 기반을 강화하고, 공급망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한층 높였다.

과거 미국 세관의 단속이 사후 관세 추징이나 통관 보류(Detention) 수준의 행정 제재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고의적인 관세 회피나 밀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미 사법당국의 민·형사상 집행이 연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제 통상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통관 실무를 넘어 기업의 리스크관리와 경영의사결정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첫 가이드라인인 「무역사기 집행 리소스 가이드(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국가사기집행부(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 내에 글로벌 무역·상거래 집행과(Global Trade & Commerce Enforcement Section)를 설치해 무역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소와 관계기관 간 공조를 담당하도록 했다.¹

2024년 한국은 대미 수출 1,278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557억 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미국의 핵심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² 그러나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로 인해, 한국 기업은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와 우회수출 관련 검증 강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될 수 있다. 미 법무부와 법무부 공조 플랫폼인 무역사기TF의 적극적인 행보는 공급망 관리와 통상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을 C-suite의 아젠다에 올려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01. 무역사기TF의 3대 사법 메커니즘: '고의적 외면' 법리와 공급망 실사 책임

무역사기TF가 높은 집행력을 갖는 이유는 법무부(DOJ)의 민·형사상 기소 역량과 세관(CBP) 및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현장 집행 권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세 가지 사법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 민사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의 적용과 징벌적 배상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관세 및 세금을 '주의의무 위반'(Reckless Disregard) 혹은 '고의적 외면'(Willful Blindness)을 통해 누락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FCA가 적용될 수 있다. 책임이 인정되면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개별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³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법원이 규정하는 '고의적 외면'의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상위 공급망(upstream partners, Tier-3, 4 vendors)의 위법 행위를 미처 몰랐다"는 사실적 무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급망 내에 잠재적 위험 신호(Red Flags)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즉, 공급망 실사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거나 협력사가 제시한 정보에만 의존해 필요한 검증을 생략했다면, FCA상 실제 인식, 고의적 외면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내부 임직원이나 경쟁사 등 정보 보유자가 관련 행위를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쿼탐(Qui Tam) 또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제도는 기업 내부자료와 대외 신고자료 간 불일치가 조사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FCA 전체 합의 및 판결액은 무려 4조원(26.8억 달러)을 넘어섰으며, 이는 미 법무부가 FCA를 활용한 민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AI 시스템과 내부고발 제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CBP의 AIS시스템(ACE 2.0)이 공급망의 '외형적 데이터(선적 정보, 지분 구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Anomaly)를 포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⁵, 내부고발자 제도는 허위 서류 작성, 이중 계약 등 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법 행위의 정황과 의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내부고발자가 제공하는 이메일, 내부 보고서 등의 증거가 AI 분석 결과와 함께 검토될 경우, 사법 당국은 위법 행위의 존재와 관련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형법 제545조(18 U.S.C. § 545)에 의거한 형사집행 및 자산몰수

밀수 및 위법한 방법으로 물품을 미국에 수입한 경우에는 미국 형법 제545조에 따라 법정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형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밀수 물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는 몰수 대상이 된다. 또한 방조·공모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 뿐 아니라 해당 물품이 위법하게 수입된 사실을 알면서 허위 서류를 제공하거나 물품의 수령·운송·은닉·판매 등을 지원한 공급망 참여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⁶

3. 조직범죄피해방지법(RICO) 및 자금세탁방지법의 연계

관세 포탈을 통해 부당하게 유보한 이익을 모기업으로 송금하거나 재투자하는 행위는 단순한 회계·재무상 조정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세탁 관련 법률(18 U.S.C. §§ 1956·1957)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및 재무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⁷

02. 무역사기TF의 주요 집행 유형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점

무역사기TF는 기존 관세·무역사기 집행사례를 바탕으로 우회수출, 관세 회피, 품목분류 오류 등 주요 위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터리, 자동차, 철강, 전자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특히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리스크 1 제3국 우회수출 및 원산지 허위 표시 (Transshipment)

중국산 원자재나 반제품을 한국 또는 베트남 등 제3국으로 반입해 단순 조립·가공(Simple Assembly 또는 Screwdriving Process)만 거친 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신고함으로써 미국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는 미국 당국의 중점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공을 통해 새로운 명칭·성질·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며, 단순 조립이나 경미한 가공만으로 원산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⁸ 한국 관세청도 미국의 고율 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에 대응해 2025년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⁹ 관세청은 그 배경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와 국내산업 피해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표적 집행사례 Ceratizit USA 사건

Ceratizit USA는 중국에서 생산된 텅스텐 카바이드를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한 혐의와 관련해서 816억원(5,440만 달러)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이후 이 사건을 무역사기TF의 주요 집행사례로 제시했다.¹⁰

리스크 2 반덤핑·상계관세(AD/CVD) 회피와 세번(HTS) 오분류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은 최대 600%에 달한다. 개별 수출 제조사별로 상이한 관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세율이 낮은 수출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품목분류나 물품의 성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재무적·사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¹¹

대표적 집행사례 Perfectus Aluminum 사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를 검용접해 반덤핑·상계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완제품 ‘팔레트’인 것처럼 신고한 업체들은 관련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8,250억원(5.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¹²

대표적 집행사례 Ford Motor 사건

포드 자동차는 화물용 밴에 임시 뒷좌석을 설치해 관세율이 낮은 승용차로 신고하고, 통관 후 좌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5,400억원(3.6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는 제품의 형식적 변경이나 허위 분류를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할 경우 막대한 법률·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¹³

리스크 3 강제노동 규제범위 확대와 입증책임 전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과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은 완제품뿐 아니라 공급망에 포함된 원자재와 부품까지 추적 대상으로 삼는다.¹⁴ 특히 UFLPA의 고위험 단속 업종은 기존 4개에서 알루미늄, PVC,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등 총 12개 분야로 대폭 확대되었다.¹⁵ 배터리 양극재 원료(리튬), 차량 경량화 소재(알루미늄) 등을 다루는 한국의 핵심 제조 벨트가 정조준된 셈이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생산되었거나 UFLPA 제재 대상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 러시아-이란-북한을 대상으로 금융·무역·방위산업 등과 관련된 제재를 규정한 미국 연방법

표 1. UFLPA 고위험 단속 업종 (High-Priority Sectors for Enforcement)

추가 시기	추가 품목 수	고위험 우선 단속 품목
2022년 최초 지정	4개	의류, 면화, 실리카 기반 제품(폴리실리콘 포함), 토마토
2024년	3개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PVC), 수산물
2025년	5개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대추(홍대추)

출처: Trade Fraud Task Force, Trade Fraud Enforcement Resource Guide, pp. 16-18 재구성

표 2. 미국 CBP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근거·제도	규제대상	발동·입증 기준	주요 행정조치
WRO (Withhold Release Order, 19 U.S.C. §1307)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물품·생산자·지역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보가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Detention), 증빙 미제출·불충분 시 수입배제(Exclusion)
Finding (19 U.S.C. §1307)	강제노동 사용이 확인된 특정 물품·생산자·지역	강제노동 사용에 관한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압류(Seizure) 및 몰수 절차
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되었거나 UFLPA 지정기업이 생산한 물품	강제노동 생산으로 추정하며, 수입자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반증	통관보류, 수입배제, 경우에 따라 압류
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북한 국적자 또는 북한 주민이 전부 또는 일부 생산에 관여한 물품	강제노동 생산으로 추정하며, 수입자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반증	통관보류, 수입배제, 경우에 따라 압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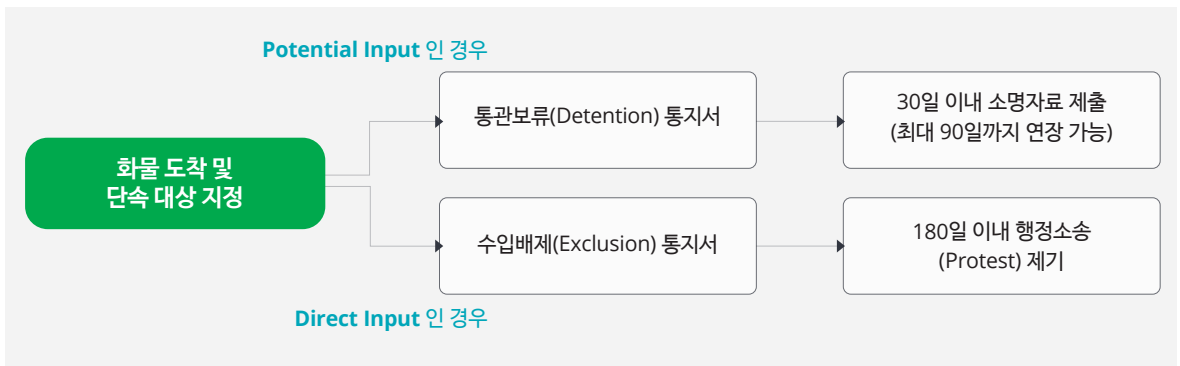
출처: 미국 CBP, UFLPA 및 CAATSA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재구성

C-Suite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UFLPA의 '반증 책임'(Rebuttable Presumption) 원칙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개별 화물의 강제노동 연루 사실을 입증하는 대신 수입업자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해당 물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입증책임이 수입업자에게 전환됨을 의미한다.¹⁶ 실제로 미국 CBP의 공식 UFLPA 집행 대시보드에 따르면, 법 시행('22년 6월) 이후 '26년 4월까지 42,807건의 화물이 심사 또는 집행 대상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 반입이 허용된 화물은 절반이 채 안되는 40.8%에 불과했다.¹⁷

03. 최대 90일의 골든타임, 형식적 서류의 한계

한국 기업의 화물이 미국 항만에 도착한 후 UFLPA 단속 대상인 잠재 연계 화물(Potential Input) 또는 직접 연계 화물(Direct Input)로 분류되어 통관보류 대상이 될 경우,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림 1. 강제노동 연루 의심 물품에 대한 미국 CBP의 집행 절차



UFLPA상 잠재 연계 화물에 대해 통관보류 통지서가 발령되면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이 UFLPA 적용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는 원산지 및 공급망 자료를 제출하고, 적용성 검토(Applicability Review)를 요청해야 한다. CBP의 승인을 받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는 경우 대응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으나, 기한 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화물은 수입 배제(Exclusion) 처리될 수 있다. 미국 현지 법인과 한국 본사 간 의사소통 및 자료 취합이 지연될 경우 이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WRO(인도 보류 명령) 적용 물품 역시 3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강제노동 무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¹⁸

이 단계에서 기존의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만으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는 원자재 채굴 단계부터 제련, 가공, 중간재 조립, 최종 완제품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인보이스, 계약서, 자재소요 명세서(BOM), 생산지시서, 제품원가 산정 내역, 은행 송금내역을 비롯해, 필요한 경우 현지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까지 포함한다.¹⁹ 평시에 공급망 참여기업과 원자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관련 증빙을 축적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 9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이 방대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04. C-Suite를 위한 선제적 방어 전략 (Action Plan)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사법 집행과 결합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은 다음과 같은 선제적 조치의 실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C-Suite 직속 '대미 무역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신설

무역 실무를 단순히 통관·물류 부서의 실무에만 맡기기는 어려워졌다. 법무, 구매, 재무, 물류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최고 경영층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주요 공급망 위험과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²⁰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업이 합리적인 실사와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디지털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 인프라 및 과학적 검증 도입

원자재 단계부터 최종재까지의 전 공급망을 디지털로 시각화하고, 고위험 지역이나 지정기업 관련 원자재의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²¹ 협력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거래·생산·물류 데이터를 연계한 디지털 추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고위험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동위원소 분석(Isotopic Testing) 등 과학적 원산지 검증 기술을 보완적 검증 수단으로 활용하여 법적 소명 및 대응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²²

③ 선제적 '美 CTPAT 무역 준수 파트너십' 사전 확보

국내 기업이 고의로 무역사기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대비해, 미국 수입 법안을 통해 아직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평시에 CBP의 CTPAT 무역 준수 프로그램(CTPAT Trade Compliance Program)에 가입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TPAT* 파트너사는 강제노동 단속 시 소명자료에 대한 '우선 심사 혜택'(Front of the Line)과 통관보류·수입배제 또는 압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알림(Preliminary Hold Notification)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이 통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물류 지연 위험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²³

*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관세당국과 민간기업 간의 대테러 무역 파트너십

05. 경영진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1. 수입자(IOR) 최종 책임의 귀속성 명확화

관세사(Customs Broker)나 현지 수입 대행사에게 실무를 위탁했다라도, 허위 신고나 우회 시도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은 계약으로 면책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수입업자(IOR)인 본사 및 법인에 귀속됨을 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적정 신고 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증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가?



2. UFLPA 12대 고위험 원자재 공급망 디지털 추적성(Traceability) 검증

리튬, 구리, 철강, 알루미늄 등 UFLPA 우선 집행 분야와 관련된 원재료가 다단계 공급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또는 UFLPA 지정기업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추적·소명할 수 있는 디지털 이력관리 시스템과 지속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가? 고위험 단속 분야의 확대와 UFLPA 지정기업 목록의 갱신에 맞춰 공급망 추적 및 검증 프로토콜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3. 우회 수출(Transshipment)의 위험성 스크리닝

동남아시아나 멕시코 등 제3국 법인을 통해 원자재를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 세관이 규정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과 원산지 규정을 완벽히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했는가? 신제품 출시 또는 새로운 거래구조 도입시 이러한 원산지·관세 검토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는가?



4. 내부 통제 및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기준(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ECCP)을 고려하여 관세·통관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가? 민사 허위청구법(FCA)의 3배 배상 및 내부고발자 제도를 염두에 둔 신뢰성 있는 내부 신고채널과 회계·물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인가? 임직원이 관세 및 통관 관련 컴플라이언스 위반 우려를 안심하고 내부적으로 제기하고, 회사가 이를 신속히 조사·시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내 소통 창구가 작동하는가?



저자

심종선 파트너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One Trade Advisory)

주석

1. DOJ Press Release, "Trade Fraud Task Force Surpasses \$1 Billion in Recoveries and Charged Losses in Less Than One Year", July 14, 2026
2. 서울경제, 美 '무역법 301조' 공세...대미투자법 지렛대로 국익 지켜야, 2026.3.13
3. p.14,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4. DOJ Press Release, "False Claims Act Settlements and Judgments Exceed \$2.68 Billion in Fiscal Year 2023", February 22, 2024
5. CBP, Trade >> ACE: The Import and Export Processing System >> Business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페이지, <https://www.cbp.gov/trade/automated/Innovation>, 2026년 7월 20일 방문
6. pp.15-16,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7. pp.16-17,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8. p.23,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9. 세정일보, "관세청, 하반기 업무보고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가범죄 차단'...역직구 지원 확대", 2026.07.15
10. p.24,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11. p.25,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12. p.26,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13. pp.24-25,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14. pp.9-10, 77-78, "CBP Forced Labor Enforcement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
15. pp.16-18,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16. p.9, "CBP Forced Labor Enforcement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
17. CBP,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Enforcement Statistics", 2026년 7월 20일 조회 <https://www.cbp.gov/newsroom/stats/trade/uyghur-forced-labor-prevention-act-enforcement-statistics>
18. pp.13-14, 19, 27-28, "CBP Forced Labor Enforcement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
19. pp.15, 17-18, 56-57, "CBP Forced Labor Enforcement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
20. p.2, 'Corporate Oversight' 챕터,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By the Trade Fraud Task Force"
21. pp.47, 51-52, "CBP Forced Labor Enforcement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
22. p.7, "CBP Forced Labor Enforcement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
23. pp.16, 46, 55, "CBP Forced Labor Enforcement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One Trade Advisory)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One Trade Advisory)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은 반덤핑, 관세, 이관가격, 국제조세 및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업무경험을 통해 기업이 국제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두용 리더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

☎ 02 6099 4847
@ doobae@deloitte.com

심종선 파트너

국제통상자문 리더

☎ 02 6138 5045
@ jonshim@deloitte.com

유정곤 파트너

관세자문 리더

☎ 02 6676 2561
@ jyou@deloitte.com

Scott Oleson 파트너

국제조세 리더

☎ 02 6676 2012
@ scoleson@deloitte.com

고중문 수석위원

Risk, Regulatory & Forensic

☎ 02 6138 6714
@ joko@deloitte.com

심윤수 이사

규제 리스크 자문 리더

☎ 02 6676 3376
@ yunshim@deloitte.com

김선형 이사

이관가격자문

☎ 02 6138 5275
@ seonhykim@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대표

권지원 Partner
jekwon@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부대표

서정욱 Partner
juseo@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